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4.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사용료 감면에 대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나. 여가선용 및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으로 체육활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다. 위탁 체육시설의 요금체계를 변경하여 이용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이용료는 시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 및 요율 규정(안 제10조)
- 나. 공공체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 관리방안 마련(안 제3조 및 제4조)
- 체육시설 보험 가입 및 읍·면·동 생활체육시설 시설관리 위임
- 다. 위탁 체육시설의 요금체계 변경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이용료 결정방식 명시(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3) 「국민체육진흥법」
- 4) 「민법」
- 5) 「초·중등교육법」
- 6) 「고등교육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조례안 붙임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미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관리하는 별표 1의 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수된 설비나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공연, 전람, 광고게시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 중 어느 하나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연습사용"이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체육시

설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이용료”란 연습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체육경기”란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운동경기를 말한다.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단체는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라.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마.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관람자”란 유료로 관람하는 사람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관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 주민의 체육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의 피해보상을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2. 체육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기점검, 보수 등의 조치

3. 관리대장 작성 등 그 밖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의 강구

제4조(시설관리의 위임) ① 시장은 읍·면·동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읍·면·동장에게 관할 행정구역의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 시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관리대장 작성
2. 안전사고 등 각종 민원 접수
3. 정기점검 및 현황조사

②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임받은 읍·면·동장은 관할 행정구역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주민의 건강증진 및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으로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하여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의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와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제6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해 체육지도자를 배치

하여 주민의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신청을 변경·취소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신청인 경우에는 사용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용변경 신청인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1. 체육시설 사용(변경사용) 계획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 또는 변경사용 신청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교육청(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및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회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그 밖에 체육행사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회 등

제9조(시설 사용료의 징수)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료는 사용허가 시 지정한 기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상업사용료, 중계방송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는 시설사용이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수시정산금액을 지정한 기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감면 대상 및 요율은 별표 7과 같다.

제11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제7조에 따라 허가 받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납부한 사용료는 그 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9조에 따라 취소할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반환

가. 최초 사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

나. 최초 사용일로부터 6일 전부터 최초사용당일까지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을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중단된 경기 및 행사로서 중단된 일수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중단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중계방송사용료의 전액을 반환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

② 제14조에 따른 관람권은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또는 행사가 중단된 경우 해당 관람료 전액을 관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 및 철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사용 중 해당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자신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나 경기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④ 사용자는 시설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처리, 현장정리 등 시설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폐기물처리 등

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회사 등과의 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시설사용료 외에 관람권 총액(검인신청서 상의 총액)의 100분의 10을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시에 징수하여 예치한다. 이 경우 초청장 또는 초대권의 발행은 관람권 발행매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되 금액이 기재되지 않아야 하며 관람권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의 금액은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산한다.

제15조(입장권의 발행)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참가자, 신문·통신·방송사 출입기자
3.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휴대한 사람
4. 65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휴대한 사람

5. 보호자를 동반한 6세 미만의 어린이

제16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및 입장권은 시가 매표한다. 다만, 사용자가 매표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청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산으로 발매할 경우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예매를 제외한 매표 및 모든 수표관리는 담당공무원의 참관 하에 사용자(주최자)가 한다.

제17조(허가 및 입장의 제한)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아니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공익상 부적당하고 인정될 때
3. 시설 사용 시 음식물이나 술을 반입하여 유해환경을 조성할 때
4.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청 없이 사용자 임의로 허가내용을 변경하여 시설을 사용한 때
5. 사용 준수사항 위반, 허가조건 위반 등 그 밖에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5조에 따라 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이용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입장을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18조(체육시설 수탁자의 책무) 법 제9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수탁자는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을 위탁한 체육시설은 법 제9조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3조(위탁운영 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을 위탁한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이 사용료를 정하여 고시한 이후 처음으로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후 시장이 사용료를 정하여 고시하기 전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다.

■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1]

체육시설의 범위(제2조 관련)

1. 전문체육시설

명 칭	위 치	기 능
박 정 희 체 육 관	구미시 박정희로 375-19 (광평동)	농구, 배구, 각종행사
시 민 운 동 장 주 경 기 장	구미시 박정희로 375-22 (광평동)	육상, 축구, 각종행사
시 민 운 동 장 보 조 경 기 장	구미시 박정희로 375-20 (광평동)	육상, 축구, 각종행사
복 합 체 육 시 설	구미시 박정희로 375-20 (광평동)	인라인롤러, 씨름, 농구, 배드민턴, 체육회관 회의실 등
금 오 테 니 스 장	구미시 산책길 105 (남통동)	테니스 등
구포동 생활체육공원	구미시 구포동 1191번지	축구, 정구, 테니스, 농구, 족구, 각종행사

2. 생활체육시설

명 칭	종 류 (종 목)
읍·면·동 생활체육시설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관할 읍·면·동장이 관리하는 실내·외 체육시설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9조 관련)

구 분		평 일		토 · 일 · 공휴일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박정희 체육관	주경기장	100,000원	300,000원	150,000원	400,000원
	보조경기장	50,000원	100,000원	80,000원	200,000원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트랙	60,000원	100,000원	90,000원	200,000원
	필드	150,000원	250,000원	250,000원	350,000원
	행사	600,000원		900,000원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트랙	40,000원	80,000원	65,000원	160,000원
	필드	80,000원	160,000원	160,000원	240,000원
	행사	400,000원		500,000원	
복합 체육시설	인라인롤러경기장	45,000원	85,000원	65,000원	120,000원
	씨름장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농구장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다목적경기장	무료	무료	무료	무료
금오 테니스장	실외(1면 기준)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실내(1면 기준)	15,000원	20,000원	20,000원	25,000원

○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조기(06:00~09:00), 주간(09:00~18:00), 야간(18:00~23:00) 각 1회를 적용한다.
- 다만, 필드(축구경기)와 테니스장(실내만 해당)의 경우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설치 등 준비하는 때부터 그 시설물의 철거 및 체육시설의 정리를 완료한 때까지로 본다.
-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또는 보조경기장의 사용인원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행사 중 체육경기 외의 기준에만 적용한다.

- 1,000명 이상 ~ 2,000명 미만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2,000명 이상 ~ 5,000명 미만 : 사용료의 100분의 100 가산
- 5,000명 이상 : 사용료의 100분의 150 가산

○ 박정희체육관 보조경기장의 사용료는 1면당 기준으로 한다.

○ 복합체육시설의 농구장, 다목적경기장은 개방시설로 별도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 구미시체육회관 회의실 사용료(부속시설사용료 포함, 1회 기준)는 다음과 같다.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 20,000원
(이 경우 지역단체, 가맹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 그 이외 단체 : 50,000원

■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3]

체육시설 이용료(제9조 관련)

구 분	기 준		평일	토·일·공휴일
금오테니스장	실외	주간	8,000원	10,000원
		조기·야간	12,000원	14,000원
	실내		24,000원	30,000원

○ 금오테니스장의 이용료 산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이용시간은 1면, 1회, 2시간을 적용한다.
- 조기(06:00~09:00), 주간(09:00~18:00), 야간(18:00~22:00)을 적용한다.
(이 경우 조기·야간은 조명사용료를 포함한다)

○ 다른 법령에서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감면 요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요율을 적용한다.

■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4]

체육시설 상업사용료(제9조 관련)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광 고	선전물	대형 (20m이상)	100,000원	・ 동일 행사 5일 이내 ・ 폭은 1.5m이내 ・ 초과사용은 1일당 해당사용료의 100 분의 20 가산
		중형 (10m이상)	50,000원	
		소형 (10m미만)	30,000원	
	부양광고물 (애드벌룬 등)	1일/1개	7,000원	
프로그램 선전책자 등의 판매		판매부수×단가	판매액의 20%	
촬영 (영화, 드라마, 상업광고 등)		주간	40,000원	3시간 기준
		야간	60,000원	
○ 전광판 광고, 기타 광고 등은 별도계약 체결을 통해 사용료를 산정한다.				

■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5]

체육시설 중계방송사용료(제9조 관련)

구 분			텔 레 비 전		라 디 오	
			국 내	국 외	국 내	국 외
중계 방송	생방송	체육경기	40,000원	60,000원	20,000원	40,000원
		체육경기 외	100,000원	120,000원	50,000원	60,000원
	녹화 또는 녹음	체육경기	20,000원	30,000원	10,000원	20,000원
		체육경기 외	50,000원	60,000원	25,000원	30,000원
○ 중계방송사용료는 주최측에서 부담한다. ○ 뉴스 보도용은 무료로 한다.						

체육시설 부속시설사용료(제9조 관련)

구 분		사 용 료	비 고
전기	경기장 조명	시설기본료(40,000원) + 실사용료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일반전기	전기 실사용료	
전광판		시설기본료(25,000원) + 전기 실사용료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시설기본료(20,000원) + 전기 실사용료	박정희체육관
냉난방	냉방	시설기본료(25,000원) + 가스 실사용료	
	난방		
음향		시설기본료(20,000원) + 마이크사용료	
상하수도		상하수도 실사용료	
○ 부속시설사용료는 박정희체육관,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복합 체육시설 인라인롤러경기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경기장 조명은 조명탑 시설을 말한다. ○ 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공공요금 기본료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 마이크사용료는 1개당 5,000원으로 한다. ○ 정하지 않은 부속시설의 사용료는 공공요금의 경우 실사용료를, 기타시설의 경우 시장의 결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요율(제10조 관련)

구 분	대 상	감면 요율
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100
감경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80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의사상자 및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가족을 위한 행사	
	구미시와의 협약에 따른 행사	
○ 감면 요율은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만 적용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부속시설사용료를 포함한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감경 대상 중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는 지역단체, 가맹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 요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체육시설 사용	☐ 허가 ☐ 변경 ☐ 취소	신청서	담당자	계장	과장	결재
접수번호			행사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단체명			직책		연락처	
사용(변경) 계획	사용시설					
	사용기간			사용시간		
	사용목적			사용인원		
	①전광판 ②애프시설 ③가변석(면) ④냉난방 ⑤기타:					
변경(취소) 사유			사용료 납부액			
변경(취소) 내용			사용료 반환청구액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체육시설 사용계획서 1부(최초 허가 또는 변경 신청시)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최초 허가 신청시)					
사용 일반조건						
○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피해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및 보상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목적 이외의 행위시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며 시설운영비(전기, 냉난방 등)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 시 필요한 조건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허 가 번 호		단 체 명	
사용시설명			
신청인 주소		성 명	
사 용 기 간		시 간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미시장 (인)			
○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반입한 각종 물품의 도난, 분실, 파손에 대하여 구미시에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음식물은 구미시에서 지정한 장소 외 일절 반입을 금합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구미시에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행사에 따른 타기관 지원요청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응급 환자 발생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 허가조건에 대한 이행의무 승낙은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로 대신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전용사용료, 시설운영경비, 원상복구비 등은 행사준비 전에 반드시 예치하여야 합니다. ○ 기타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특히, 특수효과인 소량화약점화, 불꽃연출, 탄산가스분출 등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설치(효과)는 절대 불가 ○ 사용 시 문구 해석상 의견차이는 시장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 대장

□ 시설명 :

[illegible]

검인신청서						
행 사 명						
일 시						
신 청 인	성 명 (단체명)					
	주 소					
검인내용						
관 램 권	구 분	매 수	금 액	초 대 권 (초청장)	구 분	매 수
	VIP석				VIP석	
	R석				R석	
	S석				S석	
	A석				A석	
	계				계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신청내용과 같이 검인·발행하고자 합니다. 구미시장 귀하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

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②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

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수탁재산의 이용료 등)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수탁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0.8.4., 2013.6.21.>

②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2013.6.21.>

③ 제2항에 따른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6.21.>

[전문개정 2009.4.24.]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대한체육회) ①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1.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체육경기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3.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체육인의 복지 향상

5.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6.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생략

③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 ⑦ 생략

제33조(대한체육회) ①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4.1.28>

1.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체육경기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3.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체육인의 복지 향상

5.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6.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생략

③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 ⑦ 생략

[시행일 : 2014.7.29] 제33조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①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

8.2.29>

1.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3.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 선수, 장애인 체육지도자와 장애인 체육계 유공자의 복지 향상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생략

③장애인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 ⑧ 생략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국민학교

2. 중학교 · 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3.21]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 · 통신대학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1.7.21]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

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 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 [본조신설 2012.7.17]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를」(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